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온라인경제추진단을 폐지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8항에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2. 소상공인의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3.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거점의 설치
24.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5.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채널 입점에 관한 사항
26. 신기술과 연계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7.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28.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실태조사·분석, 성과관리 및
점검
29.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발굴 및 온라인 홍보·판매 지원

별표 4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7”을 “6”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8”을 “39”로 한다.

별표 7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2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의2(온라인경제추진단)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온라인경제추진단장 1명을 둔다.</u> <u>②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u>③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관을 보좌한다.</u> <u>1. 소상공인 온라인 국내외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u> <u>2.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u> <u>3.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거점 마련</u> <u>4.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u> <u>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및 민간 채널 연계 지원</u> <u>6. 신기술 연계 소상공인 온라</u>	<u><삭 제></u>

<u>인 판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u> <u>· 보급</u> <u>7. 온·오프라인 연계 소상공인</u> <u>판로 지원</u> <u>8.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u> <u>통계·실태조사·분석, 성과</u> <u>관리 및 점검</u> <u>9.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u> <u>온라인 홍보·판매 지원</u>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⑦ (생략) ⑧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20. (현행과 같음) <u>21. 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외</u> <u>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u> <u>수립</u> <u>22. 소상공인의 1인 미디어 플</u> <u>랫폼 구축·운영</u> <u>23.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거</u> <u>점 마련</u> <u>24.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u> <u>량 강화 지원</u> <u>25.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채</u> <u>널별 입점 및 민간 채널 연계</u> <u>지원</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 ⑬ (생 략)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2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온라인
경제추진단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서

26. 신기술 연계 소상공인의 온
라인 판로 비즈니스 모델 개
발·보급

27. 온·오프라인 연계 소상공
인의 판로 지원

28.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관
련 통계·실태조사·분석, 성
과관리 및 점검

29.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발굴
및 온라인 홍보·판매 지원

⑨ ~ ⑬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2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삭 제>

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
구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
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
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u>7</u>	<u>6</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 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u>38</u>	<u>39</u>	+1
·	·	·	
·	·	·	